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58
----------	-----

2024. 11. 25.(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4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2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1월 18일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성범)

### 가. 제안이유

-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 1) 지방공무원 총수: 3,480명 → 3,558명 (+78명)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3,136명 → 3,152명 (+16명)
-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 직원: 335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397명 (+62명)

○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별표3)

- 1) 총계: 3,480명 → 3,558명 (+78명)
- 2) 일반직 계: 3,125명 → 3,141명 (+16명)
  - 5급 이하 소계: 3,085명 → 3,101명 (+16명)
- 3) 교육전문직원 계: 335명 → 397명 (+62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명 → 359명 (+62명)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sup>11)</sup>, 제20조에<sup>12)</sup>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

---

11)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범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12)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

- 영유아 보육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및 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유보통합 담당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 사항으로 판단됨
- 유보통합의 행·재정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 관리체계를 광역·기초 일괄 이관을 원칙으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관 방안을 확정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차이를 고려하되, 유형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강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향상 및 제도적 확산을 위하여 보육 관련 업무 이관을 담당하는 인력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에 순증 되는 인력 중 보은, 영동은 옥천교육지원청 권역으로, 단양은 제천교육지원청 권역으로 업무를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업무 이관 시점이 정해진 후에는 협의를 통해 지원청별 인력을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통합기관 도입

---

2. 본청, 교육지원청, 지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정·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 과제별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 늘봄학교 추진 인력 증원

- 2024년 7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인 늘봄실무사 신규 배치가 완료되어 기존의 교사가 맡고 있던 방과후학교 업무 등까지 포함하여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별 늘봄업무관리자로서 늘봄지원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 기존 교감 및 방과후 부장이 맡고 있던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늘봄지원실장 인력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늘봄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학교장이 업무의 성격, 업무 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늘봄지원실의 업무 분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늘봄지원실장 배치의 원칙인 교원과 분리된 업무의 전담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첨 <교육부-유보통합 추진체계 및 전략>

**비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 통합연수체계 마련
- ☑ 수요 맞춤 교육·보육프로그램 강화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 ☑ 교사 처우 개선 등
- ☑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 ☑ 설립·운영기준 마련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24년 100교 → '27년 3,100교

###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 [참고자료] 늘봄지원실장 선발·배치·운영(안)

※ 추후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종)** 임기제교육연구사(교육전문직원)
- **(역할)**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 관리자로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 수행  
(예시: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지원실 소속 늘봄인력·강사 관리 및 갈등 조정, 민원 처리 등)
- **(임기)** 2년 임기 동안 교육연구사로 전직 근무하고, 임기 종료 후 **연장 없이 교사로 재전직**  
(교사 복귀 전 일반 장학사 선발 시험에 응시 기회 부여하지 않으며, 복귀 후 2년 이상 교사로 근무 후 일반 장학사 선발 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선발규모)**
  - 공립 초등학교: '25학년도: 57명
  - 공립 특수학교: '25학년도: 1명
- **(선발일정)**
  - 공고: '24. 11월 중
  - 시험: '24. 11~12월 중 [서류전형, 기본소양평가(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역량평가(심층 면접 등) 예정]
  - 지원: 희망 근무지역 3개 지역까지 작성·지원(지역별 우선순위 작성)
  - 배치: '24. 3. 1. 자
- **(응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1) 늘봄지원실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
- 2) 교육실경력(기간제교사 포함) 7년 이상이고,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  
※ 교육실경력: 모든 휴직, 군경력, 파견 등(연수 및 대학원, 시·도교환파견 등)을 제외한 실제 학교 근무 경력(단,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파견 경력은 인정)
- 3)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우리 교육청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정규 교사  
※ 초등분야: 초등학교교사, 특수분야: 초등학교(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초등)
- 4)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의 경우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
- 5) 초빙교사의 경우 계약 만료 예정자

- **(배치)** 중심학교에 배치되어 순회형식 근무
  - '25학년도: 학교규모 및 지역여건 고려 3~6교당 1명 배치
- **(복무)** 일반적인 교육전문직원과 동일(단, 학교 소속으로 학교장이 지휘감독), 학교 상황에 따라 연가, 유연근무 활용 가능, 방학 중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불가
- **(승진)** 월 평정점 0.015(일 평정점: 0.0005)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별표1] 선택가산점 6. 1정 보직교사 교육전문직원 경력으로 인정 예정이며, 이외의 가산점 항목은 모두 불인정(단, 개인연구 및 연수 실적은 인정)
- **(보수 등)** 직급보조비, 연구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최소 담임 교사 수준의 급여 지급  
(연가보상비 지급 검토 중, 여비규정에 따른 순회여비 지급)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80명”을 “3,5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36명”을 “3,15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로, “335명”을 “39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558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41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101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97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9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480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9명</li> <li>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3,136명</u>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li> <li>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u>335명</u></li> </ol>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558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u>3,152명</u> -----</li> <li>3.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397명</u></li> </ol>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도의회 사무처</th> <th>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3,480</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교육감</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3,125</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5</td><td></td><td>5</td><td></td><td></td></tr> <tr><td>4급</td><td>22</td><td>1</td><td>19</td><td>2</td><td></td></tr> <tr><td>5급 이하 소계</td><td>3,085</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 소계</td><td>13</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 소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전문직원 계</td><td>335</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38</td><td></td><td>27</td><td>11</td><td></td></tr> <tr><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297</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7</td><td></td><td></td><td></td><td></td></tr> <tr><td>4급 상당</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5급 상당 이하 소계</td><td>6</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80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25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85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 계	12					연구사 소계	12					교육전문직원 계	33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별정직 계	7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도의회 사무처</th> <th>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3,558</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교육감</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3,141</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5</td><td></td><td>5</td><td></td><td></td></tr> <tr><td>4급</td><td>22</td><td>1</td><td>19</td><td>2</td><td></td></tr> <tr><td>5급 이하 소계</td><td>3,101</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 소계</td><td>13</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 소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전문직원 계</td><td>397</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38</td><td></td><td>27</td><td>11</td><td></td></tr> <tr><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359</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7</td><td></td><td></td><td></td><td></td></tr> <tr><td>4급 상당</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5급 상당 이하 소계</td><td>6</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558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41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101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 계	12					연구사 소계	12					교육전문직원 계	39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9					별정직 계	7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80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25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85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 계	12																																																																																																																																																																																																												
연구사 소계	12																																																																																																																																																																																																												
교육전문직원 계	33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7																																																																																																																																																																																																												
별정직 계	7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558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141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101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 계	12																																																																																																																																																																																																												
연구사 소계	12																																																																																																																																																																																																												
교육전문직원 계	39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9																																																																																																																																																																																																												
별정직 계	7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관계법령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 수요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78명(일반직 16명, 교육전문직원 62명)에 대한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5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산출기초	연도별 인건비 추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 정규적인건비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가. 일반직(25.단가 79,177천원×16명)	1,055,693	1,304,837	1,343,982	1,384,302	5,088,814
나. 교육전문직원(25.단가 125,354천원×62명)	6,476,623	8,005,106	8,245,260	8,492,617	31,219,607

※ 2025년 비용추계 기간: 2025년 3월 ~ 12월

※ 연도별 2025년 치우개선을 적용(3%)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보통교부금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세 출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정규직인건비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재원 조달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의존 재원	소계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7,532,316	9,309,943	9,589,242	9,876,919	36,308,421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